

##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동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세입세출외현금구좌로 관리하되”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기금은 도 금고에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 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.